

#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제출년월일 : 2000. 11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제안이유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과 생활보호법폐지로 동조례의“생활보호대상자”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”로 명칭변경

## 주요골자

- 제5조(용자대상) ③의 “학자금 용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저소득층의 자녀로서”를 “학자금 용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녀로서”로 명칭변경

##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별첨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관계부처 승인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 : 해당없음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.

평창군조례 호

##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중 “생활보호대상자” 를 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행   | 개           정   |
|---|---|
| <p>제5조(용자대상)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<br/>           학자금 용자대상은 <u>생활보호대상자</u> 및 저<br/>           득층자녀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<br/>           생중 거주지 읍·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<br/>           한다.</p> | <p>제5조(용자대상) -----<br/>           ----- <u>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</u><br/>           -----<br/>           -----<br/>           -----</p> |

【 관계법령 발췌 】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대비

|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| 생활보호법  |
|--|--|
| <p>제5조(수급권자의 범위) ①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.</p> | <p>제3조 (보호대상자의 범위) ①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업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65세이상의 노쇠자</li> <li>2. 18세미만의 아동</li> <li>3. 임산부</li> <li>4. 질병, 사고등의 결과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</li> <li>5.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이들의 부양, 양육, 간병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</li> <li>6.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자활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보호의 일부가 필요한 자</li> </ol> |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및 생활보호법의 폐지

|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|
|--|
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제1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다른 법률의 폐지) 生活保護法은 이를 폐지한다.</p> |